(양식 제1호)

2026년도 취학지원비 신청서 겸 동의서

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 교육장 귀하

아래 동의 사항에 동의하며, 2026 년도 취학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또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보호자의 서명)

신청인 연락처 전화번호
(주간에 연락되는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신청 이유(번호를 ○로 둘러싸십시오)

1.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2. 올해 또는 전년도에 생활보호가 정지 또는 폐지되었다.
3.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이나 특별아동부양수당이 아닙니다.
4. 2025년의 소득이 기준액 이하.
5. 별지 「인정 기준액을 초과해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5년도의 소득은 기준액 초과)
   ※5를 선택할 때는 이유에 맞는 필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주십시오.

【연도 도중에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이유 및 발생 연월일】
[이유]
[발생일] 년 월 일
※발생일 다음 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발생일을 접수일로 심사합니다.

【동의 사항】

취학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중학교 졸업까지의 기간 중(지급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 다음의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

1. 당해 연도 말일(3월 31일) 시점에서 인정이 계속된 경우, 계속 신청(다음 연도 이후는 신청된 것으로 간주)의 대상이 된다.
2. 세대원의 주민기본대장, 시민세·현민세 과세대장, 생활보호 수급 상황, 아동부양수당 수급 상황을 조회한다.
3. 신청서 '세대 상황'의 기재 사항(기재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변경 내용)을 교육위원회가 학교와 공유한다.
4. 전출입이 있었던 경우,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가 취학지원비의 지급 상황에 대해 해당 시구정촌에 조회 또는 통지한다.
5. 재적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취학지원비의 청구, 수령, 학교 징수금 미납의 충당 및 반납을 대행한다.
6. 취학지원비는 계좌 정보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적하는 학교를 통해 지급될 수 있다.

【계좌 정보】

취학지원비의 입금처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1 또는 2 중 하나)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또한, 1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입금에 사용하는 계좌의 통장 또는 현금 카드 등의 사본(계좌 정보 및 계좌 명의인을 알 수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1. 지정 계좌('세대 상황'란에 기재된 분의 명의만 가능)로 이체를 희망

	은 행 · 농 협 신용금고 · 신용조합		본 점 지 점	예금종별	계좌번호(오른쪽 정렬)						
				1 보통							
계좌 명의인(가나)											

2. 계좌가 없어서 학교를 통한 지급을 희망

【세대 현황】

동일 생계의 세대원 전원(동거·별거 모두 포함)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십시오.
세대원을 추가할 경우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삭제할 경우는 해당자를 이중선으로 지우고 여백에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 동일 생계의 세대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전(가계)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동거·별거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성명(한자)	성명(가나)	생년월일	취학 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이 신청서(겸 동의서)의 기재 내용은 취학지원 사무에만 사용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충분히 배려하여 취급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등이 있으면 취학지원비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